



학사학위지원센터 규정

제정일	2021.12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학사학위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사학위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설치목적) 센터는 직업교육 심화를 통해 학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산업인력을 배출하고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성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해 운영방향을 제고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 실시
2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 질 관리
3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 위원회 운영
4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
5. 기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

제 4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, 책임교수와 관련 교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5조 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학위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운영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
3. 센터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환류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